

1. 개정이유

해외감염병 신고센터를 각 공항만 여건에 맞춰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감염병 신고센터 설치 장소(안 제6조의3)

해외방문객이 건강상태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각 공·항만의 해외감염병 신고센터의 설치 가능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검역장소 개정(안 별표1)

선박 정박금지지역 설정을 위한 관계기관 요청 등의 사유로 기존 검역장소의 일부를 해제·조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입국장 내의 적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국장
2. 출국장
3. 그 밖에 관할 검역구역의 특성 및 출입국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검역소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별표 1의 부산항의 검역장소란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란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란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표 제주 국제공항의 검역장소란 중 “126도33분”을 “126도29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 부터 시행한다.

검역 장소(제5조제1항 관련)

구분	검역장소
부산항	1. 북위 35도02분47.5초, 동경 129도03분3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1천852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2. 다음의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수면(총톤수 3천톤 미만인 선박의 검역만 해당한다) 가. 북위 35도04분24초, 동경 129도01분37초 나. 북위 35도04분24초, 동경 129도02분00초 다. 북위 35도03분43초, 동경 129도01분23초 라. 북위 35도03분43초, 동경 129도02분00초 3. 다음의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수면 가. 북위 35도01분13.1초, 동경 128도54분21.8초 나. 북위 35도00분38.0초, 동경 128도55분07.0초 다. 북위 35도00분19.1초, 동경 128도55분12.1초 라. 북위 34도59분38.2초, 동경 128도51분27.6초 마. 북위 35도00분10.4초, 동경 128도51분18.9초 바. 북위 35도00분22.1초, 동경 128도52분28.5초 사. 북위 35도00분52.6초, 동경 128도52분20.9초
인천항	북위 37도21분51초, 동경 126도33분28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9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평택·당진항	다음의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수면 가. 북위 37도09분42초, 동경 126도27분42초 나. 북위 37도09분42초, 동경 126도30분54초 다. 북위 37도08분42초, 동경 126도30분54초 라. 북위 37도08분42초, 동경 126도27분42초
군산항	다음의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수면 가. 북위 35도57분40초, 동경 126도27분52초 나. 북위 35도57분40초, 동경 126도25분52초 다. 북위 35도56분10초, 동경 126도25분52초 라. 북위 35도56분10초, 동경 126도27분52초

장항항	군산항 검역 장소와 같음
보령항	북위 36도11분3초, 동경 126도18분4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800미터 원 안의 해수면
대산항	다음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수면 가. 북위 37도 03분 59초, 동경 126도 24분 48초 나. 북위 36도 59분 59초, 동경 126도 26분 18초 다. 북위 36도 59분 00초, 동경 126도 20분 00초 라. 북위 36도 59분 55.2초, 동경 126도 16분 48.4초 마. 북위 37도 00분 24.2초, 동경 126도 16분 12.7초 바. 북위 37도 00분 58.3초, 동경 126도 16분 41.0초 사. 북위 37도 01분 52.3초, 동경 126도 18분 34.7초
태안항	북위 36도55분58.3초, 동경 126도13분40.7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500미터 원 안의 해수면
목포항	북위 34도44분29초, 동경 126도20분2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3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완도항	북위 34도17분23초, 동경 126도49분08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5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여수항	1. 북위 34도39분11초, 동경 127도57분52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1천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2. 다음의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수면 가. 북위 34도44분36초, 동경 127도46분57초 나. 북위 34도44분36초, 동경 127도48분27초 다. 북위 34도42분41초, 동경 127도49분16초 라. 북위 34도42분41초, 동경 127도48분04초
광양항	여수항 검역 장소와 같음
마산항	북위 35도09분30초, 동경 128도36분09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3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진해항	북위 35도04분00초, 동경 128도42분15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5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통영항	북위 34도48분49초, 동경 128도26분53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3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삼천포항	북위 34도51분56초, 동경 128도05분23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6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옥포항	북위 34도54분02초, 동경 128도43분28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5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장승포항	북위 34도51분00초, 동경 128도45분0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5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고현항	북위 34도55분15초, 동경 128도34분0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5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울산항	다음의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수면 가. 북위 35도27분48초, 동경 129도25분43초 나. 북위 35도27분48초, 동경 129도24분07초 다. 북위 35도25분33초, 동경 129도28분00초 라. 북위 35도24분00초, 동경 129도28분00초 마. 북위 35도24분00초, 동경 129도25분12초
포항항	1. 북위 36도07분15.8초, 동경 129도30분21.4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8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2. 북위 36도05분37.3초, 동경 129도28분42.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5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다만, 도선대상선박으로써 총톤수 5천톤 미만의 선박에 한한다. 3. 북위 36도03분18초, 동경 129도24분35.7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400미터의 반경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다만, 도선면제선박으로써 총톤수 3천톤 미만의 선박에 한한다.
동해·묵호항	북위 37도30분10초, 동경 129도09분51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5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북위 37도32분15초, 동경 129도07분55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5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호산항	1. 북위 37도09분34초, 동경 129도22분59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 6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2. 북위 37도12분12초, 동경 129도22분06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 65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삼척항	북위 37도25분55초, 동경 129도12분01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25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옥계항	북위 37도37분24초, 동경 129도05분21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5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속초항	북위 38도11분36초, 동경 128도37분5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3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제주항	1. 북위 33도32분25초, 동경 126도31분09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5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2. 북위 33도32분00초, 동경 126도31분0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3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서귀포항	북위 33도14분00초, 동경 126도34분45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2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인천	북위 37도27분, 동경 126도26분의 지점(공항표준점)으로부터 인

국제공항	천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
청주 국제공항	북위 36도43분, 동경 127도30분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
김포 국제공항	북위 37도33분, 동경 126도48분의 지점(관제탑)으로부터 190도 진북방향 402미터지점에 위치한 김포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
무안 국제공항	북위 34도59분, 동경 126도22분에 위치한 무안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
김해 국제공항	북위 35도11분, 동경 128도56분에 위치한 김해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
대구 국제공항	북위 35도54분, 동경 128도39분에 위치한 대구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
양양 국제공항	북위 38도03분, 동경 128도40분에 위치한 양양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
제주 국제공항	북위 33도30분, 동경 126도29분에 위치한 제주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검역소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검역소의 규모, 검역 장소, 검역 대상 등을 고려하여 <u>입국장 내</u> <u>의 적절한 장소에</u> 해외감염병신 고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6조의3(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 ----- ----- ----- <u>다음 각 호</u> <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u>1. 입국장</u> <u>2. 출국장</u> <u>3. 그 밖에 관할 검역구역의 특</u> <u>성 및 출입국자의 접근성 등</u> <u>을 고려하여 검역소장이 적정</u> <u>하다고 인정하는 장소</u>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연 락 처	(043) 719 - 9204